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21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배준영 · 박대출 · 이상휘
김종양 · 송석준 · 김은혜
안철수 · 광규택 · 김예지
김미애 · 서명옥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 발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